

제2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3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5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2. 24.(화)
- 라. 회부일자 : 2019. 12. 2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간주처리	
계	558,929,626	558,929,626	461,174,956	3,087,194	45,878,546	48,788,930	(39,127,144)
일 반 회 계	540,757,496	540,757,496	448,064,593	3,087,194	43,396,796	46,208,913	(37,454,226)
특 별 회 계	18,172,130	18,172,130	13,110,363	0	2,481,750	2,580,017	(1,672,918)
의료급여	545,816	545,816	458,846	-	71,582	15,388	-
주민소득	843,714	843,714	461,580	-	382,134		-
주 차 장	16,782,600	16,782,600	12,189,937	-	2,028,034	2,564,629	-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

나. 명시이월 현황

-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등 46개 사업 39,127,144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2019 예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 16개 부서 / 46건		52,210,234	39,127,144
복지정책과 (1건/9,236천원)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28,000	9,236
어르신장애인과 (3건/2,388,243천원)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216,000	122,243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1,999,000	1,999,000
	경로당 신설	462,000	267,000
여성가족과 (4건/2,365,385천원)	한솔키즈빌 어린이집 매입	1,944,000	317,540
	e편한세상 국공립 전환	240,000	60,000
	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신축	1,980,000	1,980,000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10,000	7,845
교육지원과 (6건/7,140,177천원)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4,964,200	4,855,836
	금천형 과학관 조성·운영	730,000	730,000
	지역돌봄사업 추진	172,341	77,341
	나래품 방과후학교 운영	75,000	43,000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	34,000	34,000
	금천형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	1,400,000	1,400,000
기획예산과 (1건/38,359천원)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58,000	38,359
홍보디지털과 (1건/172,000천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172,000	172,000
지역경제과 (3건/377,990천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20,000	161,640
	전통시장 아케이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구주민참여)	99,350	99,35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2019 예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은행나무시장 증발냉방장치 및 아크차단기 설치	153,000	117,000
도 시 계 획 과 (2건/518,901천원)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600,000	286,850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516,517	232,051
공 원 녹 지 과 (4건/1,618,902천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1,450,000	764,430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36,000	5,216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200,000	200,000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	700,000	649,256
주 차 관 리 과 (1건/1,672,918천원)	공영주차장 건설	8,144,656	1,672,918
도 로 과 (2건/294,560천원)	관내 도로보수	1,516,000	280,000
	신속한 제설대책	249,400	14,560
행 정 지 원 과 (1건/893,970천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903,000	893,970
문 화 체 육 과 (9건/10,203,983천원)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1,200,000	1,200,000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37,000	8,500
	북앤커피 도서관 조성	109,000	108,400
	독산도서관 생활SOC 사업	1,977,603	1,805,310
	공립 해오름 작은도서관 생활SOC 사업	85,400	85,400
	공립 참새 작은도서관 생활SOC 사업	32,000	9,800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4,850,000	4,847,786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기금)	750,000	750,00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2019 예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485,000	1,388,787
마 을 자 치 과 (4건/6,347,057천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4,535,000	4,535,000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591,340	199,680
	생활안전 CCTV 설치	1,550,000	1,550,000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72,377	62,377
청 소 행 정 과 (1건/10,000천원)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10,000	10,000
도 시 재 생 과 (3건/5,075,463천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27,800	9,974
	새뜰마을사업 추진	1,009,440	987,435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615,810	4,078,054

다. 명시이월(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건수	이월액	연번	부 서 명	건수	이월액
계		46	39,127,144				
1	복지정책과	1	9,236	9	공원녹지과	4	1,618,902
2	어 르 신 장 애 인 과	3	2,388,243	10	주차관리과	1	1,672,918
3	여성가족과	4	2,365,385	11	도 로 과	2	294,560
4	교육지원과	6	7,140,177	12	행정지원과	1	893,970
5	기획예산과	1	38,359	13	문화체육과	9	10,203,983
6	홍보디지털과	1	172,000	14	마을자치과	4	6,347,057
7	지역경제과	3	377,990	15	청소행정과	1	10,000
8	도시계획과	2	518,901	16	도시재생과	3	5,075,463

4. 검토의견

- 2019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최종 규모는 5,589억 2,962만원으로 당초예산 4,611억 7,495만원과 제1회 추경 30억 8,719만원, 제2회 추경 458억 7,854만원, 간주처리 487억 8,893만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6건 391억 2,714만 4천원이며

이중 행정재경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20건 180억 4,335만 9천원임.

기획경제국 5건 588,349천원

행정문화국 15건 17,455,010천원

-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역비 등 5건 5억 8,834만 원임

가. 기획예산과 명시이월 : 1건 3,835만 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9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교부세(금)	별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58,000	38,359	38,359	0	0	
1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용역비)	58,000	38,359	38,359			[집행시기 미도래] 연구과제 수행기간 연장 및 2019.10. 특교금 교부에 따른 추가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하고자 함.

나. 홍보디지털과 명시이월 : 1건 17,200만 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9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교부세(금)	별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172,000	172,000	172,000	0	0	
1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시설비)	172,000	172,000	172,000			[연도 내 지출 불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9.12.에 교부되어 사업 추진 기간 부족. 2020.1. 계획 수립 후 2020.6. 설 치 완료 예정

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 3건 37,799만 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9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사유)
			계	특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계 (3건)		472,350	377,990	278,640	0	99,350	
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설비)	220,000	161,640	161,640			[연도 내 지출 불가] `19.8.특별교부금이 교부. 전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19.11. 완료하였음. 동철 기 도로 굴착 금지 기간(11 월-3월)으로 공사 연기
2	전통시장 아케이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구주민참여) (시설비)	99,350	99,350			99,350	[연도 내 지출 불가] 당초 아케이드 상부에 서 사공 및 유지관리의 안전 문제로 상인회와 협의 후 주차장에 설치예정(`20.1. 사공 예정)
3	은행나무시장 증발냉방장치 및 아크차단기 설치 (시설비)	153,000	117,000	117,000			[연도 내 지출 불가] 증발 냉방장치는 아케이드 구조물에 부착하는 시설로 아케이드 설치 준공 (`19.12.) 후 사공 예정 ※ 아크차단기는 설치 완료

다 검토결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2)에 따라 경비의 성

- 1)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 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예산총칙 제5조(명시이월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 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검토결과

본 안건 기획예산과 1건, 홍보디지털과 1건, 지역경제과 3건 중 3건은 특별교부금이 10월에서 12월중 교부되어 사업 추진 기간의 절대적 부족이며 지역경제과 2건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안전 문제로 상인회와 협의 후 주차장에 2020.1.시공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수입·세출예

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